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서일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0898

발의연월일 : 2025. 6. 17.

발 의 자 : 서일준・임종득・권영세 서천호・박충권・서범수 윤한홍・고동진・신성범 권성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,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(특례시)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,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・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이러닝(전자학습)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, 교육 및 훈련 실시, 이러닝센터 지정 등의 정책결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9조, 제12조 및 제20조).

법률 제 호

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정부”를 “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정부”를 “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정부는 제1항의”를 “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계획 또는 제2항에 따른 시·도별”로 한다.

② 시·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이러닝사업의 창업과 발전을 위하여 시·도별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제20조제1항 중 “정부”를 “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”로, “지원”을 “지원(시·도지사의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으로 한정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“정부”를 각각 “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)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63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비용평가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3조(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,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·신고,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·신고, 그 밖의 행위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전문인력의 양성)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.	제9조(전문인력의 양성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----------.
②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, 「평생교육법」 제33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·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	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----------.
제12조(창업의 활성화) ① (생략)	제12조(창업의 활성화) ①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② 시·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이러닝사업의 창업과 발전을 위하여 시·도별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② 정부는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	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계획 또는 제2항에 따른 시·도별 --------.
제20조(이러닝센터) ① 정부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에 따른 이러닝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러닝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	제20조(이러닝센터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----------지원(시·도지사의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으로 한정한다)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정부는 이러닝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	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----------.
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이러닝센터가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이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.	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----------. ----------.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